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5. 2.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 가 족 지 원 과**

||| 목 차 |||

I. 과업 개요	1
II. 과업 내용	3
III. 과업 추진일정	11
IV. 과업 수행지침	12
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8
VI. 보안대책	20
V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4
VII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25
IX.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27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32
붙임 2.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	33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4.12.29. 제주항공 항공기(HL8088)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인수하여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1.20)
 - 지원단은 중앙부처·지자체·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지속
- 국내에 항공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체계는 빈약
 -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전 대응사례 및 유가족 요청에 따른 검토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
 -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고 유사 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정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
- ① (매뉴얼 제정) 실효성 있는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제정하여 적시에 체계적인 활용
 - * 현재 「항공기사고 피해 유가족·희생자·생존자(FLS) 지원업무 표준교안」(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있으나, 피해자 지원 활용에 미흡
- ② (국가위기대응체계 편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아래 주요상황 대응매뉴얼로 편입하여 법적 구속력 부여
 -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3. 과업의 수행기간 및 예산

-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이 과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50백만원으로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과업 내용

- ◎ 본 영역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20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붙임 참조)」를 반영한 매뉴얼 제정
 - － 유가족 입장에서, 피해자 지원단계에 따른 종류·내용에 기존 지원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의 연결 및 재구성
- ◎ 1:1 전담공무원의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전담공무원의 의견청취를 통해, 피해자 직·간접 지원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유가족 정보 서식 제정

㉢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 조사

- 국내 발생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 사례의 조사·분석
 - * 아시아나항공 OZ733편 해남 추락(93.7.26),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OZ991편 추락 사고('11.7.28) 등
- 해외 발생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 사례의 조사·분석
 - * 대한항공 007편(KAL007) 격추 사건('83.9.1), 대한항공 KE801편 괌 추락 사고 ('97.8.6), 대한항공 KE8509편 화물기 추락 사고('99.12.22),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13.7.6) 등
- 항공사고 외 참사* 관련 피해자 지원 사례의 조사·분석
 - * 양양 산불('05.4.4), 대구지하철 화재('13.2.18), 마우나 리조트 붕괴('14.2.17), 고양 터미널 화재('14.5.26), 판교 환풍구 붕괴('14.10.17),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20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참조, 행정안전부), 세월호, 이태원 사고 등

㉔ 사고유형별·기관별 사고수습 및 관계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 사고유형(규모, 경중)별* 사고수습 및 관계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함) 협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사항은 개별법령에 근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수습,
-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않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습, 국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제도개선 등 수행

-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 별도 고려 가능한 사고유형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㉕ 피해자 등의 정의, 피해자 지원 조직의 구성, 직원 행동사항 등 행동 매뉴얼에 관한 사항

○ 국내 및 해외 유사제도 조사·분석

○ 피해자(희생자, 부상자, 유가족 등) 등의 정의, 피해자 파악 방법, 피해자 지원 조직(현장지원센터 포함)의 구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의 특징[상태, 흥분, 유형(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류] 파악 및 특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예우
- 1:1 전담공무원 활동을 통한 개선사항 청취
- 전담공무원 구성 및 해체, 전담공무원 임무카드(유가족과의 소통방안, 장례진행 시 참여방법 안내 등 포함) 및 유가족 정보 서식 작성, 시기별 역할(다양한 유가족 요구에 부응)

㉖ 지원시기의 구분, 시기별 지원형태에 관한 사항

○ 단계별(예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점 추진사항, 활동내용, 대응·조치사항, 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기관(지원주체)별* 사고수습 및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협업
 - * 국가 및 지자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제조사, 항공기사용사업자, 비정부기구 및 전문 민간회사 등
 - (항공사) 자발적 위로금(장례시설비, 체류비, 조의금 등), 몬트리올 협약 배상금(항공사 가입 보험사*) 등
 - * 제주항공 : 삼성화재(간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총 5개 보험사 공동운영(해외 재보험사 AXA XL에 99% 출재)
 - (정부 및 지자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시민안전보험 등
 - (기타) 생명보험·여행자보험(개인), 국민성금·기부금 등
- 피해자 유형별(아동·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방안
 - 가정위탁제도,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제도 등
- 피해자(유족) 범위 및 보험을 통한 배상주체(항공사)의 명확 여부에 따른 피해구제심의위 설치 기준
-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의 세부적 상황별 지원사항
 - 상황별 판단 기준
 - 긴급지원(사고 직후) : 사고 발생 인지 단계, 사고 수습 단계 등 세분화
 - 맞춤지원(사고 수습 후) : 단계 세분화
 - 사후지원(일상복귀 후) : 단계 세분화
- 주요 상황별 지원 흐름도
- 제도 도입·운영 방안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 국민 모금 활동 등 국민행동에 관한 사항
-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후견인 제도 지원*(후견인 선정, 배상금 안전 관리 등)
 - 미성년 피해자 보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군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
 - * (국방부)예비군 동원 면제, 장병휴가 연장, (병무청) 군입대 연기, (행안부)민방위 면제 등
- 지역사회 지원(여행업체, 관광업계 매출 감소 등) 및 문화적·종교적 고려사항
-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제도적 측면

▣ 피해자 소통 - 안내(통지) 및 참여에 관한 사항

- 유가족의 정신적·경제적인 충격 완화 및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목적
- 소통책임자, 전담조직 및 실무자 지정 등의 소통시스템
- 사고조사위원회의 유가족 대표 참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과정 안내(수시), 가족 입회 하 사고조사 브리핑 실시, 희생자 확인 및 유해 인도 절차 안내, 사고 원인 파악 방법에 대한 안내, 사고 현장 방문 지원 안내, 유가족 및 언론 대상 브리핑(시기, 장소, 방법) 등
- 부상자 지원에 관한 협의, 만15세 미만 우선지원 협의
- 후속조치 등 중장기적 지원 안내

▣ 피해자 집중 심리지원(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사항

- 장·단기 심리지원 방안(현장중심 조직→제도·정책지원 조직) - 접근성 (찾아가는 서비스 등) · 전문성 제고, 사회적 처방 서비스 참조(영국, 2018)

- 관계부처 합동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대상, 중앙부처별 운영기관
 - * 12.29제주항공 사고 : 복지부(국가·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안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전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네트워크 및 지역별 심리회복 지원 협의체 운영 주체 및 방법
- 상황(시기)별 심리지원프로그램 - 심리지원 유형(국립병원/개인병원, 양약치료/한방치료, 노령유족간병), 심리지원 대상(피해자, 경찰, 소방, 군), 심리지원 절차 등
- 심리안정지원매뉴얼, 심리안정지원요원, 심리지원센터
- 네트워크 대상 전문가 및 전문기관 리스트 등

㉔ 피해자의 지원 및 보상·배상 절차에 관한 사항

- 유가족 피해배상 근거법령과 내규, 세칙
 -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지급(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사), 항공사 운송약관, 상법(제4편 보험), 지자체 조례 보험약관(시민안전보험), 개인 보험약관(여행자보험 등) 등
 -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07.12.29. 국내 발효)」, 상기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무과실 책임한도 규정(151,880SDR=약 2.9억원)
- 지원금 및 배상금 지원절차*
 - * 민법 상 상속우선순위에 따른 수령권자, 전문가 자문단, 법률상담 서비스 등 고려
- 시민안전보험(지자체), 생명보험·여행자보험(민간), 성금·기부금 등

㉕ 유해 및 유품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㉔ 보안(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용관리, 조직 구성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폐쇄적이고 조용한 회의실 제공, 가족지원센터(예시) 보안 제공 등
- 정보공개 범위(탑승객 성명, 위치 등), 유가족 협의회 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㉕ 2차가해 방지 및 기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고려(전담공무원·일반국민 등 포함)
-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악성 유튜버,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댓글 차단, 강력한 수사 등 대책마련
 - 컨트롤센터, 경찰청 전담수사단, 사이버수사팀 투입, 유언비어·모욕성 게시물 모니터링 및 피의자 검거 등 적극 대응, 법률자문서비스 등

㉖ 피외국인 피해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및 지원

- 항공기 사고의 발생국가와 인접국의 준수사항(ICAO Annex 9) 및 소통체계 등

㉗ 제도개선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수당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㉘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 ICAO ‘피해자 지원 매뉴얼(Doc 9973)’ 및 12.29제주항공 사고 관련 ‘관계기관 피해자 지원 안내서’ 등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항공기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아래 ‘주요상황 대응매뉴얼’로서의 성격 반영
-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서」 등 참조

☐ 관련 법령(행정규칙 포함) 개정안(타 법령 포함) 제시 및 기타

- 본 매뉴얼을 가시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전담공무원 사항 등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서식 마련 등
- 각 기관별, 법령(지침)별 준수사항 등은 표, 박스 등 처리하여 가시성 극대화, 본문과 부록의 구별
- 지원 항목에 대하여 서술하고 표로 정리, 필요시 그림 등 이미지 이용
- 부록에 ①국내 항공사의 피해자 지원계획, ②항공·재난 분야 전문가 POOL(한국교통연구원, 항공대학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포함
- 매뉴얼은 레이아웃 등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현장 원페이지 핵심정리 포함, 교재 제작용 한글(HWP), 워드(DOC)와 강의용 파워포인트(PPT)를 모두 개발
- 필요에 따라 내용 가감 가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70%, 지방비 30%, 미선포: 지방비 100%

복구 계획 수립 절차	재난발생 정부·지자체 대처가 필요한 피해	지방재난피해조사 재난상황 종료 후 시·도 대책본부장이 정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재난상황 종료 후 중대본부장이 정함	관계부처 협의 수습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복구계획 심의·확정 복구계획(안) 작성, 중대본부회의 상정·심의·복구계획 확정 및 통보			
피해자 지원	구호·생계 지원	구분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원단가	부담률	국고 70% 지방비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8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호)
		구호금	중앙사고 수습본부	가구구성원이 사망·실종한 유족 장해등급 14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상 부상자	1인당 2,000만원(세대주, 세대원) 장해등급 1~7급 : 1,000만원, 8~14급 : 500만원			
		생계비	중앙사고 수습본부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을 상실 또는 재난으로 휴업·폐업·실직 주생계수단인 농·어·임·염생산업 시설 또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물 등 50% 이상 피해	62만원(1인가구) 162만원(4인가구) 104만원(2인가구) 190만원(5인가구) 133만원(3인가구) 217만원(6인가구)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26만원씩 추가			
		주거비	국토교통부	주택피해(유실·전파), 주택피해(반파), 세입자 보조 기타 주거 불가능, 정부 이주요구 등	2,000~3,600만원(전파), 1,000~1,800만원(반파) 세입자 600만원 이내(보증금과 6개월 임대료 중 큰 금액) 150만원 이내(1일 5만원 기준, 최대 30일)			
		구호비	행정안전부	주택피해(전·반파)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10,000원/1일/1인 (유실·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불가능 15일 등)			
		교육비	교육부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	100만원/6개월수업료/1인 ※ 학교별로 확인하여 지원, 무상교육 대상 제외			
		소상공인	행정안전부	영업장이 전파·반파·유실 및 주요시설 등 파손 되어 영업이 불가	업체당 300만원 ※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이 불가한 경우 단가의 50% 지원			
		복구비	소관부처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 피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방비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소관부처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해당 재난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항목 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재난유형별 개별 법령	
간접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29종						• 관계법령	
보상금	장례비, 위자료, 사망자 유가족 지원금 등(필요시)						• 원인자 부담원칙(보험 등) • 관계법령(민법, 국가배상법 등)	
피해수습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부담액	부담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공공시설 복구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시설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국가시설> 국고 100% <지방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 그 밖의 공공시설: 국고 50~100%				
	수색·구조비	소방청(육상), 해경청(해상)	실제 처리 비용	국고 100%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제 처리 비용	국고 100%				
	추모사업: 정부합동문헌소 설치·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제 소요 비용	국고 100%				
	기타 추모사업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제 소요 비용	협의 결정				
	파손된 주택 철거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제 소요 비용	국고 100%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제 소요 비용	국고 100%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사항은 개별법령에 근거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Ⅲ. 과업 추진일정

과업 내용	과업수행기간 (5개월)					과업량
주요 과업 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소계
1. 자료조사 및 개요 작성						20%
2. 피해자 지원방안 검토						30%
3. 피해자 지원방안 작성						30%
4. 매뉴얼 작성						20%
보고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100%

IV.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본 과업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급 이상의 학위(수료 포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석사급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학사급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발주처는 연구참여자가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참여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참여자 교체를 요청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출처 및 연도)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 요청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 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연구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종료(준공) 예정일 3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전문가 활용 및 자문회의(공청회, 간담회 등 포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협회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관련 업·단체를 최대한으로 참여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준공검사 승인하지 않고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 기타사항

- 연구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3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한다.
-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모든 성과물은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라.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마.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바.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과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5개월)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업무보고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요청 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함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3주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규격, 편집, 인쇄방법, 표지,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5부, 파일	용역과업착수에 따른 연구계획 보고
중간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	5부, 파일	
최종보고서 초안	준공 예정 3주 전	파일	
최종보고서	준공일	10부, 파일	USB 각 2개 포함

※ 제출 수량은 추후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서(자문회의결과 포함)는 별도양식 없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Ⅵ. 보안 대책

1.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붙임 서식 참고)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붙임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물 관리

- 용역성과물은 사본번호를 부여하며 과다 발간 지양 또는 납품물량의 추가발행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성과물 인쇄업체 현지 확인을 통해 원판 회수 및 불량·과지 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처에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업무일지

년·월·일	관리 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작업구분 (초안,입·출력, 복사, 파기 등)	비밀 등급	제목	건수 (매수)	작업 담당	수령자		폐지처리		결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V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VII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로 하며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제출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일반현황에 기재할 참여연구원은 참여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에 따라 결정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처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 시 제출하여야 함

IX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선정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5인 이상)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관련기관(업체) 근무시의 경력에 한한다.
-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한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업체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table><tr><th colspan="3">신용평가등급</th><th rowspan="2">배 점</th></tr><tr><th>회사채</th><th>기업어음</th><th>기업신용</th></tr><tr><td>A+, A0, A-, BBB+, BB0</td><td>A1, A2+, A20, A2-, A3+, A30</td><td>A+, A0, A-, BBB+, BB0</td><td>5</td></tr><tr><td>BBB-, BB+, BB0, BB-</td><td>A3-, B+, B0</td><td>BBB-, BB+, BB0, BB-</td><td>4.5</td></tr><tr><td>B+, B0, B-</td><td>B-</td><td>B+, B0, B-</td><td>4.0</td></tr><tr><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d>3.5</td></tr></table>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A0, A-, BBB+, BB0	A1,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정량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A0, A-, BBB+, BB0	A1,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신용도	• 최근 3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table><tr><th colspan="2">배점 기준</th><th>배 점</th></tr><tr><td colspan="2">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td><td>5</td></tr><tr><td colspan="2">③ 6개월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td><td>4.5</td></tr><tr><td colspan="2">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td><td>4</td></tr><tr><td colspan="2">④ 1년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td><td>3.5</td></tr></table>	배점 기준		배 점	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③ 6개월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4	④ 1년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5										
배점 기준		배 점																									
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③ 6개월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4																									
④ 1년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기술·지식 (자격)	• 사업 책임기술자(책임연구원) 연구수행경력 <table><tr><th>심사항목</th><th>배점 기준</th><th>배 점</th></tr><tr><td rowspan="4">사업 책임기술자의 항공, 재난 또는 법률 분야 업무 경력</td><td>① 10년 이상</td><td>10</td></tr><tr><td>② 5년 이상~10년 미만</td><td>8</td></tr><tr><td>③ 3년 이상~5년 미만</td><td>6</td></tr><tr><td>④ 3년 미만</td><td>4</td></tr></table>	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 점	사업 책임기술자의 항공, 재난 또는 법률 분야 업무 경력	① 10년 이상	10	② 5년 이상~10년 미만	8	③ 3년 이상~5년 미만	6	④ 3년 미만	4	10													
	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 점																								
사업 책임기술자의 항공, 재난 또는 법률 분야 업무 경력	① 10년 이상	10																									
	② 5년 이상~10년 미만	8																									
	③ 3년 이상~5년 미만	6																									
	④ 3년 미만	4																									
• 참여기술자 자격 보유현황 <table><tr><th>심사항목</th><th>배점 기준</th><th>배 점</th></tr><tr><td rowspan="3">책임연구원 (5점, 50%)</td><td>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재난 (법률 포함)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td><td>5</td></tr><tr><td>②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td><td>3</td></tr><tr><td>③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td><td>1</td></tr><tr><td rowspan="3">연구원 (5점, 50%)</td><td>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법률 포함)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td><td>5</td></tr><tr><td>①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td><td>3</td></tr><tr><td>③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td><td>1</td></tr></table>	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 점	책임연구원 (5점, 50%)	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재난 (법률 포함)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②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③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1	연구원 (5점, 50%)	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법률 포함)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5	①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	③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1	10									
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 점																									
책임연구원 (5점, 50%)	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재난 (법률 포함)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② 해당분야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③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1																									
연구원 (5점, 50%)	①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항공(법률 포함)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5																									
	①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																									
	③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업무 (제안) 평가	제안서 개요	- 제안요청 내용(배경, 목적, 과업범위, 기대효과)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정성 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30	
	과업 수행계획	- 연구 수행체계의 합리성 - 연구용역 추진 일정·방법,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20	
	과업관리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경영상태)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 평가항목 점수 부여 방법

○ 정성평가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30점 : 30점(매우 우수), 28점(우수), 26점(보통), 24점(다소미흡), 22점(미흡)

20점 : 20점(매우 우수), 18점(우수), 16점(보통), 14점(다소미흡), 12점(미흡)

10점 : 10점(매우 우수), 9점(우수), 8점(보통), 7점(다소미흡), 6점(미흡)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기술능력 평가시 평가 착안사항

- 주요 과업내용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수행 조직체계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 유의 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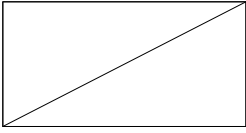
○ 제안서는 항목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작 성 항 목	포 함 할 내 용
I. 제안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특징 등
II.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등 <서식 2>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전문가 보유 현황 등 <서식 4>
3. 연구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연구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III. 사업수행	·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방법론 등 기술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관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최종목표 기술
2. 연구의 내용	· 주요내용 기술
3. 연구의 수행능력	· 연구의 수행능력(관련 연구경험 등)에 대한 기술
4. 추진전략 및 방법	· 주요내용별 과업수행전략 등 기술
5. 추진일정계획	· 연구(관리)업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6. 기대성과 및 활용	· 연구(관리)를 통한 활용방안 등 기술
IV. 사후관리	
1. 하자보수	· 연구(관리) 결과 오류검증 및 수정방안
2. 사후관리 능력	· 연구(관리) 관련 사후관리 능력
3. 정보보안	· 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
V. 기타사항	· 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50페이지 이내)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4.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서식 3> 활용)
 - 경영상태, 신용도
5. 전문가 보유 현황 (<서식 4> 활용)
6.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서식 5> 활용)
7. 사업 수행(사업이해, 과업접근방법, 사업수행, 투입인력)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6> 활용)
9.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서(<서식 7> 및 <서식 8> 활용)
10.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서식 9> 활용)
11.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12. 참고 법령 및 문헌

※ 과업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순서로 PDF 파일 별도 1부 제출

<서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2025. . .

업체(기관)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본금			
	매출액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서식 3>

업체(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			
	~			
	~			

주) 최근 3년 이내 (입찰 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서식 4>

전문가 보유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항공 또는 재난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 기재							

- 주) 1. 이 건 관련 연구수행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면 사본 등) 등 증빙자료 첨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_____

휴대전화 _____

e-mail _____

직 장 _____ 직 위 _____

직장전화 _____ 연락가능팩스 _____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국토교통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회사명: _____

주 소: _____

본인은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대표이사 성 명 : (인)